KPMG

Newsletter

Newly Issued Tax Interpretations

한·미조세조약 해석상 국외에서는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 5 건에 대한 사용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한 대가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2023 년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례에서, 2019 년말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 다목과 같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해당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한·미 조세조약이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지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사용료의 원천지국은 국내 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나아가,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 93 조 제 10 호 차목에 따라 국내 미등록·국외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 2025 중 0213, 2025.04.28, 유사 결정례 조심 2022 중 5865, 2022.10.06).

Keynote: 조세심판원은 2019 년말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 다목 신설 이전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조심 2017 중 2806, 2018.10.02 등). 반면, 법원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 및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옴(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 두 36592 판결 등).

다만 2019 년말 개정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법원 판결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 국내인 경우 국외공급용역으로서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국내사업자 A 는 국내에서 암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일본의 B 사에 전달, B 는 C 사를 통해 해당 혈액의 면역세포를 배양하여 다시 국내사업자에게 보낸 다음, 국내사업자 A 는 국내에서 면역세포가 배양된 혈액을 환자에게 주사하고 환자들로부터 면역세포치료 용역의 대가를 수취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국내사업자 A 가 B 를 보조하여 알선 및 송출, 채혈, 운송, 주사 등과 같은 역무들을 국내에서 수행하였으나 전체 면역세포치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면역세포 배양 등이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가 국외인 일본으로서 국외공급용역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자 A 가 환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조세심판원은「부가가치세법」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면역세포치료용역 제공에 있어 그 핵심적인 부분인 환자들에 대한 채혈, 주사 등 치료행위나 그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환자들에게 제공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은 국내이므로 국내사업자 A 가 환자들로부터 수령한 면역세표치료 용역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조심 2024 서 2641, 2025.03.26).

Keynote: 용역의 공급장소는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02.18. 선고 2014 두 13829 판결 등)을 따른 결정으로서, 역무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시사함.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캐나다 외국 연기금이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였을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상 과세대상 양도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 방법

최근 유권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232, 2025.03.13)은, 캐나다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 국내 동업기업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 13 조 제 5 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연기금을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Keynote: 상기 해석사례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지분율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에 규정된 방식과 무관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로, 한국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25% 지분율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즉, 외국 실질귀속자가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를 한 경우, 실질귀속자의 투자기구에 대한 보유비율은 고려하지 않고, 투자기구가 상장회사에 대해 보유한 지분율만을 실질귀속자의 지분율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제한세율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ERP 프로그램 사용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태국 과세당국은 해당 대가를 한·태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아닌 외국인이 개발한 “상업상 장비의 사용”이라 판단하여 1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내국법인은 한국 국세청에 태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가가 한·태국 조세조약 제 12 조 제 3 항 가목의 사용료소득(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하여 국세청은 해당 대가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서 5%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음(서면-2024-국제세원-3149, 2025.03.11).

Keynote: 한국법인에게 지급되는 ERP 프로그램 사용 대가를 태국 과세당국이 소프트웨어 사용대가(5%)가 아닌 상업용 장비 사용대가(15%)로 원천징수 과세한 경우로서, 이러한 태국 과세당국의 원천징수 과세가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한국 국세청이 확인한 사례임. 본 사안에서 해당 내국법인은 구제책으로서 국세청에 태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이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임(서면-2022-국제세원-4793, 2022.12.27 등).

외국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국내 자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0 호 다목의 '증여'로 보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외국법인이 미국 소재 모회사로부터 국내 비상장법인의 지분 100%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 받았으나 해당 출자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즉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사례에서 해당 출자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0 호 다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조세심판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법인세법에 증여에 대한 별도 정의조항이나 상증세법 준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 개념을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의 2 에서 자산의 증여를 '무상이전'으로 한정하고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해당 현물출자가 그룹 구조조정을 통한 관리·운영 단순화 목적의 합법적 거래이고 한미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에 따른 것으로 조세형평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차액은 법인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조심 2022 서 7930, 2025.03.31).

Keynote: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열거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아 생기는 소득"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법 문언 해석에 충실한 결정 사례로 평가됨.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24 년 12 월 24 일자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25.02.18. 선고 2022 구합 51956 판결).

비록 복지포인트가 사용 용도 제한, 이월 불가능, 양도 불가능 등의 특성이 있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임직원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봄. 더불어 근로복지기본법이 임금 등 기본적 근로조건만을 근로복지 개념에서 제외할 뿐 복지포인트와 같은 후생 관련 급여까지 모두 제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이 양립불가능한 개념은 아니며,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차등 취급도 합리적 차등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Keynote: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선행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 두 34122 판결)를 따른 하급심 판결임. 선택적 복지제도를 채택한 회사들은 급여소득 원천징수 시 근로자에게 제공된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외국법인 지점의 소재지국 납부세액이 CFC 규정상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카자흐스탄 소재 광구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카자흐스탄에 광구를 보유한 외국법인(네덜란드 소재)의 지분을 인수하고, 해당 외국법인은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법인세 (CIT, Corporate Income Tax)와

지점세 (BPT, Branch Profit Tax)를 납부하고 있음. 해당 지점 소득은 외국법인의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만, 네덜란드 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됨.

해당 네덜란드법인이 카자흐스탄 지점을 통해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네덜란드법인의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정 목적 상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외국법인 지점이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2 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CFC 규정상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서면-2024-법규국조-0250, 2025.04.28).

Korea Tax Updates

최근 국세청 담당 부서와의 논의를 반영하여 5 월 뉴스레터 내용을 업데이트 함

부가가치세 월별 거래명세 제출의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까지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 75 조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PG), 전자금융업자 그리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이하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월별 거래명세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해당 거래정보는 각 분기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 일까지, 거래당사자 정보, 거래 건수, 거래금액 등 거래 관련 기초정보를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개별 거래의 매도자가 외국법인).

2025 년 3 월 세법 개정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플랫폼 사업자 등의 경우에도 상기의 거래정보를 제공할 의무자로 추가로 열거됨. 이에 따라 과거에 한국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던 외국의 플랫폼 사업자 등 역시 한국 세무당국에 판매자가 한국 법인/거주자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국세청 담당 부서와의 논의에 따르면, 국세청은 6 번달 말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음. 외국사업자가 NTS web site 에 접속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진행중인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되어야 등록의무 여부, 신고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제출의무자가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2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Upcoming Tax Reporting Reminder

•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제출 사전통지서**: 2025 년 6 월 30 일까지 제출 (해당 사업연도가 12 월말 종료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제출)

•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2025 년 6 월 30 일까지 제출 (해당 사업연도가 12 월말 종료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제출)

•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및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2025 년 10 월 15 일까지 제출

International Tax Team – Key Contacts

Oh, Sang Bum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Lee, Sung Wook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Cho, Sang Hyun	sanghyuncho@kr.kpmg.com	02-2112-7687
Suh, Yu Jin	yujinsuh@kr.kpmg.com	02-2112-0930
Song, Hyung Woo	hyungwoosong@kr.kpmg.com	02-2112-0275
Min, Woo Kee	wmin@kr.kpmg.com	02-2112-6886
Kang, Sung Won	kang22@kr.kpmg.com	02-2112-6771
Ryu, Su-Seok	suseokryu@kr.kpmg.com	02-2112-6787

home.kpmg/socialmedia

Privacy | Leg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